#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0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박균택·김현정·김용민

김태선 • 이건태 • 전현희

황 희 · 노종면 · 황운하

김문수 · 한민수 · 정준호

이개호 • 박지혜 • 양부남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처럼 통신이용자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규정 위치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이용자의 성명
  -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다. 이용자의 주소
  -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또는"으로, "감청"을 "감청을 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를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거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사용제한"을 "사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취득된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을 "통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열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 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신사 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을 "통신사실확인 자료등 제공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을 "통신사실확인 자료등 제공요청사실"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등 제공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을 한 때에는"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을 "통신사실확인자 료등 제공사실 등"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을 "통신사 실확인자료등 제공요청서 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 터"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

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으로 한다.

제13조의5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사용제한"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하여 취득된 정보를 사용한 자
-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청하는 통신사 실확인자료등 제공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u>.</u>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1의2. "통신이용자정보"라 함</u>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이용자
	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u>가. 이용자의 성명</u>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u>다. 이용자의 주소</u>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u>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u>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
	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u>말한다)</u>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
	<u>지일</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	①
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점열·전기통신의 <u>감청</u>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 건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 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 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1. ~ 5. (생략)
- ② ③ (생 략)
- 第12條(通信制限措置로 취득한 출 資料의 사용제한) (생 략)

<신 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u> 전 <u>실 확인자료제공의</u>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u>통신사업자</u>"라 한다)에게 <u>통신사업자</u>"라 할다)에게 <u>통신사업자</u>"라 할다)에게 <u>통신사업자</u>"라 할다)에게 <u>통신사업자</u>"라 할다)에게 <u>통신</u>

-	<u>또는</u> <u>감청을</u>
č	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
_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사
7	실확인자료등"이라 한다)를 제
-	공하거나,
-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	2條(通信制限措置로 취득한
Ì	資料의 <u>사용제한 등</u> ) <u>①</u> (현행
7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u> </u>	사용이 종료된 경우 취득된 자
<u>;</u>	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	3조(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u>
/ -	실확인자료등 제공의 절차) ①
-	
-	
-	
-	
-	<u>통</u>
/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열람

출(이하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u> <u>공</u>"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 다.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u>통신사실확인자료를</u> 제 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 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u>통신사</u> 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u> 등 제공</u>
<u>.</u>
② (현행과 같음)
③ <u>\\\\\\\\\\\\\\\\\\\\\\\\\\\\\\\\\</u>
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u>통신사실확</u>
인자료등 제공
<b></b>
4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u> -
<u>통신</u>
사실확인자료등을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3항에 따라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u>통신</u>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u>통신사실 확인자료</u>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 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u>통신사실</u>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u>통</u>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공요청서 <u>등</u> 관련자료를 <u>통신사실확인자</u> 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 치하여야 한다.

⑧ (생략)

(2)
통신사실확인자료
<u>등</u> 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요청
사실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요청서
<b>6</b>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⑦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u>제공을 한 때에는</u>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사실
<u> 등</u>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요
<u>청서 등통신사실</u>
확인자료등 제공일로부터
⑧ (현행과 같음)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실</u>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u>통신사실확</u> 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 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 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u>통신사실확인자료제</u>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u>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 조에 따라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u>통신사실</u>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u>통신사</u> 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1. · 2. (생략)
-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u>통</u>

9
통신사실확
인자료등 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
인자료등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의 통지)
①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통신사실확인자
 료등 제공
통
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1. • 2. (현행과 같음)
3 <u></u>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 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 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통신사실</u> 확 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 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u>통신</u> 차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u>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 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u>통신</u>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 ③ <u>통신사실확인자료</u>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 용한다.
-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 저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 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에 따른

에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u>통신</u>
사실확인자료등 제공의 절차
등) ①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②
<u>통신사</u>
실확인자료등 제공
<u>통신</u>
사실확인자료등 제공
③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세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
의 사용 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제공

비밀준수의무 및 <u>통신사실확인</u> <u>자료의 사용제한</u>에 관하여 이 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 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u> <u>공</u>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 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생 략)

<u>통</u> 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사용제한
<u>통신</u> 사실확인자료등 제공 
<u>통</u> 신사실확인자료등
 제15조의3(시정명령)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u>제공</u>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②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1. ·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③ • ④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1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하여 취득된 정보 를 사용한 자
-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 ③ · ④ (현행과 같음)